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인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군인권보호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국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그 하부조직으로 군인권보호총괄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를 평가대상으로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6명, 6급 5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5명, 6급 4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며, 침해조사국 군인권조사과를 군인권보호국의 하부조직으로 조정하고, 인권상담조정센터의 군 인권 상담에 대한 기획·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별시정국에 성차별시정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인권교육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면서 해당 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며, 장애인 인권 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보건

복지부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광주인권사무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제주인권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4. ~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침해조사국 및 차별시정국”을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및 군 인권보호국”으로 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제4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기본권·권리 및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을 “기본권·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및 군 인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제2항 중 “아동청소년인권과, 군인권조사과”를 “아동청소년인권과”로, “두되”를 “두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성차별시정팀을 두되”를 “성차별시정과를 두며”로,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성차별시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연구

2. 제1호에 따른 조사·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성차별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정책·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한·증인의 보호
5. 여성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6.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국내외 홍보·협력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군인권보호국) ① 군인권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군인권보호국에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군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연구
3. 제2호에 따른 조사·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4. 군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5.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

6. 군 교도소에 대한 방문조사

7.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군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인권 침해(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2. 제1호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정책·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한·
증인의 보호

3. 법 제50조의6에 따른 군인 등의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의 입회에 관한 사항

⑤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인권 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이하 이 항에서 “군
인권교육”이라 한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협력 및 시행

2. 군인권교육과 관련된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연구

3. 제2호에 따른 조사·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권고 또
는 의견의 표명

3. 군인권교육 실시 등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

4. 군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5. 군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를 포함한다)의 개발·보급 및 관리

6. 군 인권 침해 중 성차별·성희롱 관련 사항에 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7. 제6호에 따른 조사·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군 인권 침해 중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9. 제8호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정책·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인·증인의 보호

10. 군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협력

제13조제2항 중 “17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5조 중 “제13조 및 제14조”를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로, “15명”을 “16명”으로, “5급 5명”을 “5급 6명”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차별시정국장, 홍보협력과장, 장애차별조사1과장 및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한시정원) 인권교육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189”를 “205”로 하고, 일반직 계 “184”를 “20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6”을 “7”로, 서기관 “14”를 “17”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3”을 “12”로, 행정사무관 “38”을 “46”으로, 행정주사 “43”을 “48”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90”을 “20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85”를 “201”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6”을 “7”로, 서기관 “14”를 “17”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3”을 “12”로, 행정사무관 “42”를 “49”로, 행정주사 “45”를 “51”로 한다.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중 “2022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9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29064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1835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 제8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군 인권”을 개정하는 부분, 제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2항·제6항, 제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의3, 제16조 및 별표 5 3)부터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인권위원회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18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3을 적용한다.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4를 적용한다.

[별표 2의3]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대통령령 제00000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관련)

총계	190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3
일반직 계	185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서기관	1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
교정관	1
검찰사무관	1
출입국관리사무관	1
행정사무관	39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43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
행정주사 · 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3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비서)	1
행정주사보	31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3
행정서기	3
행정서기보	11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운전서기보	3
기록연구사	1
경찰공무원 계	1
경감	1

[별표 2의4]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대통령령 제00000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 관련)

총계	191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3
일반직 계	186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서기관	1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
교정관	1
검찰사무관	1
출입국관리사무관	1
행정사무관	42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46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3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비서)	1
행정주사보	25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2
행정서기	3
행정서기보	11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운전서기보	4
기록연구사	1
경찰공무원 계	1
경감	1

[별표 5]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7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정책교육국 교육협력심의관	1명 (고위공무원단)	2023년 9월 30일까지
2)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과	1명 (4급 1명)	2024년 9월 30일까지
3) 군인권보호국	1명 (고위공무원단)	2025년 3월 31일까지
4) 군인권보호국 군인권보호총괄과	4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2025년 3월 31일까지
5) 군인권보호국 군인권협력지원과	7명 (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2025년 3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교육국, <u>침해조사국 및 차별시정국</u> 을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제6조(하부조직) ----- ----- ----- <u>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u> <u>및 군인권보호국</u> ----- -----.
제8조(정책교육국) ① ~ ④ (생략) ⑤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정책교육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인권(<u>제4항제1호</u> 에 따른 기본권·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인권교육, 이주(移住)·아동·청소년·군 인권, 장애차별,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1. --- <u>제6항제1호</u> ----- ----- ----- ----- ----- ----- ----- ----- -----
2. 인권(<u>제4항제1호</u> 에 따른 기본권·권리 및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2. ---- <u>제6항제1호</u> ---- <u>기본권·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및 군 인권</u> ----- ----- -----

의견 제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권리 및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관련 사항은 제
외한다)

4. ~ 9. (생략)

⑥·⑦ (생략)

⑧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단서 신설>

1. ~ 12. (생략)

⑨·⑩ (생략)

제9조(침해조사국) ① (생략)

② 침해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인권침해조사과, 아동청소년인
권과, 군인권조사과 및 기획조
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
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
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
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⑥ 군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

3. -----

----- 제6항제1호 -----

4. ~ 9.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⑧ -----

----- .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 ~ 12. (현행과 같음)

⑨·⑩ (현행과 같음)

제9조(침해조사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

----- 아동청소년인

권과 -----

----- 두며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을 분장한다.

1. 군 인권 관련 법령·제도·

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
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

· 제도의 개선

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

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
금 지급 및 진정한·증인의
보호

5. 군 교도소에 대한 방문조사

6. 군 인권에 관한 교육

7. 군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

협력

⑦ (생 략)

제9조의2(차별시정국) ① (생 략)

② 차별시정국에 차별시정총괄
과,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차별
조사2과 및 성차별시정팀을 두
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차별시정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성차별시정과를 두
며----- 서

기관으로 보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⑥ 성차별시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의 조사 ·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여성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성차별 및 성희롱 행위에 관

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

· 제도의 개선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

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 · 증인의 보호

6.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국내

외 홍보 · 협력

기관-----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성차별시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균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에 대한 조사 · 연구

2. 제1호에 따른 조사 · 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성차별 및 성희롱 행위에 대

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정책 · 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인 · 증인의 보호

5. 여성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과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6.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국내

외 홍보 · 협력

<신 설>

제9조의3(군인권보호국) ① 군인

권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군인권보호국에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군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연구
3. 제2호에 따른 조사·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4. 군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5.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
6. 군 교도소에 대한 방문조사

7.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군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인권 침해(성차별 및 성희
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2. 제1호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정책·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
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인·증인의 보호

3. 법 제50조의6에 따른 군인 등
의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또
는 수사에의 입회에 관한 사
항

⑤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인권 침해를 개선·예방
하기 위한 인권교육(이하 이
항에서 “군인권교육”이라 한
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
획·협력 및 시행

2. 군인권교육과 관련된 법령·

제도 · 정책 · 관행에 대한 조사 · 연구

3. 제2호에 따른 조사 · 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군인권교육 실시 등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

4. 군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 · 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5. 군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를 포함한다)의 개발 · 보급 및 관리

6. 군 인권 침해 중 성차별 · 성희롱 관련 사항에 대한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의 조사 · 연구

7. 제6호에 따른 조사 · 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군 인권 침해 중 성차별 · 성희롱 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9. 제8호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정책 · 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위원회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략)

<신설>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인·증인의 보호

10. 군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협력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20명 -----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5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원회 및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의2제1항 및 제13조에 도 불구하고 차별시정국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제8조제4항, 제9조의2제2항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홍보협력과장 및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8조(한시정원) 장애인 인권 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제15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례)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

----- 16명-----

----- 5급 6명-----

-----.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차별시정국장, 홍보협력과장, 장애차별조사1과장 및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8조(한시정원) 인권교육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둔다.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29064호 국가인권위
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성차별시정팀은 2023
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성차별시정팀장이 분장하는 사
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차별시정총괄과장이 분장한다.

대통령령 제29064호 국가인권위
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부칙

<삭 제>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89</u>	<u>205</u>	+16
·	·	·	
·	·	·	
일반직 계	<u>184</u>	<u>200</u>	+16
고위공무원단	<u>6</u>	<u>7</u>	+1
·	·	·	
서기관	<u>14</u>	<u>17</u>	+3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13</u>	<u>12</u>	-1
·	·	·	
·	·	·	
행정사무관	<u>38</u>	<u>46</u>	+8
·	·	·	
·	·	·	
행정주사	<u>43</u>	<u>48</u>	+5
·	·	·	
·	·	·	

[별표 2의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0</u>	<u>206</u>	+16
•	•	•	
•	•	•	
일반직 계	<u>185</u>	<u>201</u>	+16
고위공무원단	<u>6</u>	<u>7</u>	+1
•	•	•	
서기관	<u>14</u>	<u>17</u>	+3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13</u>	<u>12</u>	-1
•	•	•	
•	•	•	
행정사무관	<u>42</u>	<u>49</u>	+7
•	•	•	
•	•	•	
행정주사	<u>45</u>	<u>51</u>	+6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5